#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3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5.

발 의 자:민형배・이정문・윤준병

이수진 • 조계원 • 김문수

이용선 • 이훈기 • 이강일

김영배 · 정동영 · 이언주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현재 폭언·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합니다.

보건복지부 '2023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'에 따르면, 사회복지사 33%가 언어폭력, 29%가 위협 또는 신체폭력을 겪었습니다. '2022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연구'에서 응답자 약 86%가 최근 2년간 근무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습니다.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은 폭언·폭행 등에 자주 노출됩니다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.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

제5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,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(이하 "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"이라 한다)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(이하 "사회복지사등"이라 한다)을 폭언 또는 폭행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워과 사회복지사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5조의2(사회복지 업무 종사자
	보호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
	는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
	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
	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(이하
	"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"
	이라 한다)과 사회복지사 등
	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
	(이하 "사회복지사등"이라 한
	다)을 폭언 또는 폭행, 그 밖에
	정신적 ·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
	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
	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	②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거나
	이용하는 사람은 사회복지 업
	무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
	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협조
	<u>하여야 한다.</u>
제5조의2(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	제5조의3(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
원칙) (생 략)	원칙) (현행 제5조의2와 같음)